

【 10 】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2002. 7. 8

제 출 자 양 주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2003년 2월 28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가 시행되게 됨에 따라 2002년 7월 31일까지의 정원 감축 기한이 연장됨에 따른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직렬·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함(안 부칙 제3항)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주군조례 제1782호(2001.12.3) 부칙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에 대하여는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기 정 안
<p>양주군조례 제1782호(2001.12.3) 부칙 <u>(신 설)</u></p> <p>③(한시정원) (생 략)</p>	<p>양주군조례 제1782호(2001.12.3) 부칙 <u>③(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호의 규정에</u> <u>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에 대하여</u> <u>는 2003년 2월28일까지 그 초과하는 현원에</u> <u>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u></p> <p>④(한시정원) (현행과 같음)</p>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

개정구분 : 부분개정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2003년 2월 28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가 시행되게 됨에 따라
- 2002년 7월 31일까지의 정원 감축 기한이 연장됨에 따른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직렬·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함(안 부칙 제3항)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상황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기타 참고사항

- 기구·정원규정 개정령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정·현원관리지침

(자제 12200-362 2002.6.10)

- 현행조례(전문)

[자제 12200-362]
2002. 6. 10]

機構·定員規程 改正令 施行에 따른
地方自治團體 定·現員 管理指針

京畿道

目 次

I.	改正令의 内容	1
II.	改正의 趣旨	1
III.	改正令의 内容解說	2
①	결원의 총수범위내에서만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인정	2
②	결원발생시 직종·직급별 분부합 우선 해소	3
③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 규칙 개정	3
IV.	行政事項	4

機構·定員規程 改正令 施行에 따른 地方自治團體 定·現員 管理指針

I. 改正令의 内容

----- <기구·정원규정 개정내용> -----

대통령령 제16550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개정령 부칙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지방자치
단체의 결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2003년 2월 28일까지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공포·시행일 : '02. 6. 10(대통령령 제17624호)

* 신·구조별 대비표 : 별지 1

II. 改正의 趣旨

- '98년부터 4년간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방구조조정
으로 지방공무원 56,633명을 2002. 7. 31로 감축완료함으로써
지방구조조정 마무리
 - * 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 총감축목표 달성
- 다만, 지방구조조정 과정에서 각기관별로 나타나는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 부여 필요

III. 改正令의 內容解說

① 결원의 총수범위내에서만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인정

- '02. 7. 31 현재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결원의 총수 범위내의 초과현원에 한하여 '03. 2. 28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음
 - 따라서, '02. 7. 31 현재 자치단체별로 결원의 총수를 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직권면직('02. 8. 1일자) 해야 함
 예시) '02. 7. 31 현재 전체 초과현원이 200명이고, 전체 결원이 150명인 경우 50명은 직권면직 조치
 - 직종 · 직렬 · 계급별 정원관리체제를 유지하면서 초과현원이 있는 자치단체의 초과현원과 직권면직대상자를 산정하고 관리할 경우에 적용하되
 - '02. 7. 31 직권면직시(3차 직권면직)에 적용하고
 - '02. 8. 1부터 '03. 2. 28까지는 직종 · 직급별로 정원과 현원의 불부합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함
 - 다만, '03. 2. 28까지 직종 ·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 가능
 - * 기한연장과 관련한 행정자치부 협의사항에 관한 지침은 주후 별도 통보
 - '02. 8. 1부터는 초과현원의 총수만큼 결원의 총수를 유지해야 하므로 초과현원의 총수를 넘는 결원에 대하여만 보충 가능
- ⇒ 자치단체별로 '02. 8. 1에는 정원의 총수와 현원의 총수가 일치 됨으로써 모든 자치단체가 구조조정에 따른 감축목표(총수) 달성

② 결원발생시 직종·직급별 불부합 우선 해소

- 결원이 발생하였거나 새로운 행정수요로 인하여 정원이 증원된 경우 직종·직급별 불부합상태를 우선적으로 조정하여 정원과 현원이 일치되도록 노력
- 신규로 증원된 정원에 대해 당해 자치단체에서 직종·직급별 불부합을 해소 하고도 신규충원을 해야 할 경우
 - 1차로 불부합 현원이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전입하여 충원하고
 - 전입 희망자가 없을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신규모집 실시
 - ※ 시·도에서 자치단체별 직종·직급별 해소를 위한 인사교류 방안으로 적극 조정
- 기 통보한 지침을 참조하여 직종·직급별 불부합 적극 해소
 - * 자제 12200-109('00. 5. 27), 자제 12200-536('00. 7. 26),
자제 12200-755('00. 10. 11), 자제 12200-182('01. 3. 9)

③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규칙개정

-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
 - '03. 2. 28까지 결원의 총수범위내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
 - ※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의 총수를 명시
 - 조례시행일 : '02. 8. 1
 - * 정원조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예시) : 별임 2

○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개정

- 조례에서 '03. 2. 28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의 총수에 대해 계급별 정원을 규정
- 규칙시행일 : '02. 8. 1
※ 정원규칙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예시) : 별임 3

IV. 行政事項**[1] 후속 행정절차 이행 철저**

- 면직자선정심의위원회 조속 구성·운영(2002. 6. 15까지 구성)
 - 자치단체별 부단체장 소속하에 별도 설치
 - 자치단체별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면직기준 마련
- 직권면직기준 확정 및 면직대상자 결정시 미리 인사위원회 의결
- 늦어도 '02. 6. 30까지 직권면직대상자 확정·통보

[2] 직종·직급별 불부합 해소 추진상황 보고

- 보고일자 및 보고서식은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별도 통보
- 등 보고는 정원과 인사(현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확히 작성